

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(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)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 교육위원(이하 '위원'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4 조 (여비지급) 위원이 회기중 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교육 자치에 관한법률 제8조 제3항 및 등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 위원(이하 '위원'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 2 조-제 3 조(생략)</p> <p>제 4 조(여비지급) <u>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</u></p> <p>제 5 조-제 9 조(생략)</p>	<p>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교육 자치에 관한법률 제24조(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)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 교육위원(이하 '위원'이라 한다)</u></p> <p>-----</p> <p>제 2 조-제 3 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4 조 (여비지급) <u>위원이 회기중 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</u></p> <p>제 5 조-제 9 조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